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47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정윤

피고1. B

2. C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태

3. D

변론 종결2021. 7. 14.

판결 선고2021. 8. 18.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2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6.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나. 피고 C은 피고 B,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사기 고소 등

- 1) 원고는 2017. 5.경 피고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피고 B, 피고 D에 대하여는, 2018. 10. 18. '피고 B, 피고 D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써, 2015. 2. 12.경 원고에게 E 공사 하도급을 줄 의사와 능력 없이, 위 공사 하도급을 줄 것을 약속하면서 사업추진 경비, 법인 인수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 B의 처인 피고 C 명의 계좌로 합계 219,6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사기죄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각 징역 2년, 1년에 처하는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단711 사기 사건).
- 2) 피고 B는 위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9. 1. 11. 직권파기사유로 인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였지만 범죄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제1심판결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하였고, 2019. 3. 18. 상고 취하로 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18노3949 사기 사건), 이하 피고 B, 피고 D에 대한 확정판결을 모두 통틀어 '관련 형사 판결'이라 하고, 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 중 E 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3) 한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소속 검사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고소내용 중 피고 C에 대한 사기 혐의 부분에 관하여는 2018. 4. 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변제 약정

원고는 2016. 5. 16. 피고 C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송금한 금원에 관한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자신의 남편인 피고 B를 통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해 준 돈 중 자신은

120,000,000원을 소비하였고, 이는 자신이 책임지고 원고에게 변제하겠다고'라고 구두로 약속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피고 C이 원고와의 통화로 한 변제 약정을 '이 사건 변제 약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B, 피고 D은 관련 형사 판결에서 확정된 바와 같이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는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합계 219,600,000원을 편취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편취금 219,6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사재판에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확정된 형사 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 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29051 판결 등 참조).

나)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관련 형사 판결의 범죄사실과 같이 피고 D과 공모하여 사기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편취금 합계 2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9. 원고에게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임원에서 사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함으로써 원고와의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동업 관계 내지 원고에 대한 채무가 청산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1)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인정된다.

① 원고가 2016. 3. 19. 피고 B에게 'C에게 2015년 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투자금액에 대하여 더이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②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2016. 6. 11. '원고가 피고 B, 피고 D에게 지급한 3억 원에 대하여 피고 D이 책임지고 변제하고, 위 금액에 대하여 합의서 작성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피고 D의 G사업과 관련된 H 주식회사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여, 위 사업에 관한 보강토 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주며, 피고 D과 피고 C은 F의 지분을 포기하고 위 회사의 임원에서 사임한다'라는 취지의 합의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③ 피고 C은 2016. 6. 13.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F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고, 원고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2)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당사자 사이에 그 채무가 모두 청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 B는 관련 형사 판결 공판과정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채무 면제 내지 채무 청산합의를 주장하면서 이 사건 확인서와 이 사건 합의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관련 형사 판결에서는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서는 피고 B가 원고에게 F가 수주받는 공사를 통해 1억 원 정도의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인데 원고는 F를 통해 그와 같은 공사를 전혀 수주받지 못하였고, 원고가 위 F의 주식을 양수한 것만으로 대물변제로서 의미도 없으며, 이 사건 확인서가 피고 B의 주장과 같이 조건 없는 채무 면제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후 이 사건 합의서가 별도로 작성될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위와 같이 확정된 관련 형사 판결의 판단과 달리 불만한 자료는 새롭게 제출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합의서의 명시적 문언에 의하더라도, 피고 D, 피고 B가 운영하는 H 또는 F를 통해 원고에게 보강토 공사를 하도급 주기 위해 위 회사의 주식에 담보를 설정하거나 그 주식의 지분을 양도해준다는 내용으로, 원고에 대한 피고 B, 피고 D의 채무가 위와 같은 주식 담보설정 또는 양도만으로 면제·청산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합의서는 모두 원고가 피고 D이 운영하던 H나 F를 통해 어떠한 공사를 수주하여 사업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아무런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이상 원고와 피고 B, 피고 D 사이에 유효한 채무 면제 내지 청산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③ 피고 B는, 피고 D와 원고가 공모하여 F의 지분을 인수하여 위 회사를 통해서초동 빌딩 매입을 위한 400억 투자를 받는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9호증의 기재는 원고에 대하여 동일한 변제 책임을 지는 피고 D의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편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와 같은 사업을 시도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해당 사업으로 어떠한 수익을 얻은 것도 아니어서, 원고에 대한 피고 B, 피고 D의 채무가 변제되었다거나 청산된 것이라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따른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피고 B가 편취한 금원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편취금 중 120,000,000원을 자신이 소비하였음을 인정하면서 그 변제를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변제 약정에 따라 나머지 피고들과 연대하여 편취금 합계 219,600,000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또는 선택적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 B의 편취금을 본인 명의 통장으로 송금받아 소비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앞에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변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피고들의 편취금 합계 219,600,000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의 송금액에 관한 출처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하여 자신에 대한 채무를 면제해 주었음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모른 채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한 것이므로, 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피고들이 제출한 을 제1 내지 3호증,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변제 약정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 및 갑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 및 합의서 작성 사실을 알았거나 그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 B의 편취금 중 자신이 소비한 120,000,000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확인서, 이 사건 합의서는 모두 원고가 F 등을 통해 어떠한 공사를 수주받는 것을 조건으로 작성된 것이고 원고가 그와 같은 공사를 수주받지 못한 이상 유효한 채무 청산 합의로 볼 수 없다는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더구나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 C이 아닌 피고 B에게 작성해 주었다는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이 피고 C에 대한 채무 면제 내지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피고 B는 관련 형사 판결 공판과정에서, 이 사건 확인서를 피고 C이 아닌 원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가 면제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은 주장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모두 배척되었다).

② 피고 C은 2016. 3. 12.경 피고 D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자신 명의 지분 양도·양수 및 오피스텔 가스비 관리비 미납 등에 관하여 항의하면서, 원고의 입금내역 등을 언급하기도 하였고, 피고 B는 2016. 3. 14. 피고 D에게 '본인이 체납한 세금으로 인해 아내인 피고 C 명의 창원 소재 임야가 압류되어 피고 C과 갈등이 있었고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위 세금을 해결한 다음 임야 매도를 알아보았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 B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자신의 처인 피고 C 명의로 F의 사내이사를 등기하고, 사업용 차량 등을 구입하여 피고 D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여, 피고 C은 적어도 위 2016. 3. 중순경에는 피고 B가 본인 명의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업을 운영한 점과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위와 같은 피고들 사이 대화 내용에다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후 다시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 C이 F 사내이사에서 사임하고 원고가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한 사실까지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확인서 및 이 사건 합의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한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음을 알았다고 보인다.

④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하면서, 피고 B와 피고 D이 수행하려던 이 사건 사업이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대부분이 피고 D에 송금되었고 자신이 본인 명의 통장으로 위와 같이 송금된 금원 중 자신이 소비한 내역이 120,000,000원임을 스스로 확인하였다면서 원고에게 원고의 송금액 중 피고 D에게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 D에게 그 변제를 요구할 것을 권유하고, 본인이 소비한 위 120,000,000원에 대한 변제 방법으로 본인 소유 창원 소재 임야를 매도하여 변제할 것이라고 제안을 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변제할 채무 액수와 사유, 방법 등에 관한 의사를 원고에게 전달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 C의 구체적인 변제 금액과 변제 방법의 제시, 이 사건 사업 내용 및 자금의 소비 등에 대한 언급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변제 약정이 어떠한 착오에 기인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⑤ 그 외 피고 C은 원고의 협박으로 인하여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원고가 피고 C을 협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고, 이 사건 변제 약정 당시 대화 내용, 대화 시간, 피고 C과 원고의 음성 등에 비추어 피고 C이 원고의 강박에 의해 이 사건 변제 약정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변제 약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선택적 청구인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주장 부분은 별도로 살펴보기 아니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 피고 D은 연대하여 사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편취금 합계 219,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변제 약정에 따라, 피고 B, 피고 D과 연대하여 위 219,600,000원 중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최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정희

판사오승희

판사임현화